



- ▶ 2007.6.27 배포
- ▶ 총 2 쪽

보 도 자 료

- ▶ 외국인력고용팀 이태희 팀 장
 - ▶ 외국인력고용팀 황효정 사무관
- T E L : 2110-7080
E-MAIL : divah@naver.com
F A X : 504-672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한-키르기즈 고용허가제 MOU 체결

- 키르기즈 근로자들의 합법적 한국 취업길 열려 -

-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키르기즈 르쓰쿨로바 아이굴(Ryskulova Aigul) 이주및고용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노동부에서 키르기즈 인력의 송출·도입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-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송출국가 10개국(필리핀, 몽골, 스리랑카,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, 우즈베크, 파키스탄, 중국, 캄보디아)외에 5개국(방글라데시, 키르기즈, 네팔, 미얀마, 동티모르)을 새로운 송출국가로 추가 선정하였으며,
 - 금일 한-키르기즈 양국 노동장관이 MOU에 서명을 함으로써 키르기즈는 신규 5개 송출국가 중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.
- 이기권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“이번 MOU 체결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, 한-키르기즈 양국간 협력관계도 앞으로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말했다.

□ 체결된 MOU에는

-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키르기즈 이주및고용위원회 소속 기관인 ICC(Information Consulting Center)가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,
- 한국어능력시험(EPS-KLT) 합격,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,
-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, 불법체류자 감소, 송출비리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.

□ 이번에 체결된 MOU 이후 한국어 시험후속합의서 체결, 송출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설치,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,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

- 이르면 올해 말부터 키르기즈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노동부는 밝혔다.

□ 고용허가제를 통해 키르기즈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들은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(1588-1919)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.